

제8부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1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 지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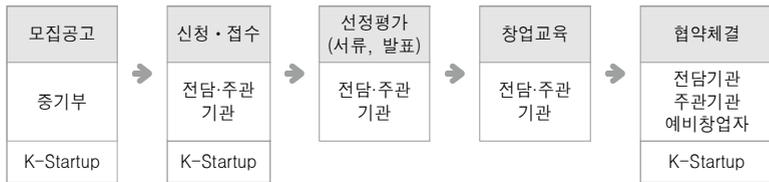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 기업이 정신,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창업기초부터 투자, 마케팅 등 성과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제공
- 멘토링 지원 : 창업 경영 전반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1,500명 내외(988.89억원)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모집공고를 확인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2단계 평가 진행 예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예비창업실) : 044-410-1803~1810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A.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해야하는 걸까요?

A. 주관기관은 신청 후 선정평가, 사업 진도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 수행합니다.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변경은 불가하오니 공고문과 함께 제공되는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통해 보유역량,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8-2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특화프로그램)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초기창업실) : 044-410-1834, 1837~9, 1841, 1843~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창업 3년 이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창업 패키지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8-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도약기(3~7년)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혁신, 시장진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고도화 등 사업화자금 지원 및 마케팅, 상장, 디자인 개선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최대 3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사업모델 개선, 제품·서비스 고도화 자금 지원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기회 제공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 개발 역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예산 900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860, 186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1~3년)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사업 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 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8-4

재도전성공패키지

우수한 (예비)재창업자 발굴·육성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사업 공고일 기준)
 - IP전략형 트랙의 경우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까지 가능
 - TIPS-R 트랙의 경우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까지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최종 선정 공지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 제출하거나 선정전까지 완납한 기업은 예외)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일반형, 채무조정형, IP전략형(40~60백만원 이내), TIPS-R(1억원 이내)
 -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2.1월 말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성실경영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문제인식(폐업 원인 분석 등), 실현가능성(제품,서비스 개발 방안 등), 성장전략(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팀 구성(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
 - * 세부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재도전창업실) : 044-410-1760~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지원조건에 나이, 지역, 폐업한 일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A. 나이, 지역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으나, 폐업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Q. 재창업 전 폐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A. 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8-5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TIPS)

민간주도형 창업사업화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틱스 운영사가(창업기획자 등)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지원대상

-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종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 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팁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운영사 추천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및 현재 프리팁스 및 팁스 R 수행기업(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 아래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성공’판정
 -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사업화에 따른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이상),
 -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프리팁스)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0개월간 최대 1억 지원
 -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
 -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포스트팁스)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 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18개월 최대 5억원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프리팁스 협약기간 12개월 → 10개월로 축소
- ▶ 포스트팁스 협약기간 24개월 → 18개월로 축소

신청·접수

-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 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 (정부 최종 선정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등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프리팁스)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사업성, 기술성 등
- (포스트팁스) TIPS 성과,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3440-7306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프리팁스는 개인이나 엔젤투자자로 받아도 지원자격 되나요?

A. 안됩니다. 프리팁스의 투자자는 '팁스운영사, 엑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 개인투자조합' 3가지만 인정됩니다.

Q. 타 창업사업화 사업(초기, 도약패키지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팁스 이후 '창업사업화'사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 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동시에 중복으로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단, 협약기간이 3개월 미만 남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팁스운영사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중기부 지정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

8-6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사업화 지원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20~'21년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Post-TIPS(포스트팁스) 선정 자(기업)
- ▶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 ▶ 공고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국내외 신시장 분석, 사업모델 최적화, 시장개척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후속지원 및 타 기관 사업연계 등 지원
 - 연중 창업기업 규제 해소, R&D 기획, 후속 투자유치 IR, 홍보 등 후속지원
 - 특별보증, 정책자금, R&D 등 타 기관 사업 연계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규제 해소, R&D 기획 등 후속지원 강화

신청·접수

- K-유니콘 홈페이지(www.k-unicorn.or.kr),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요건검토 → (1차) 기술·사업성 평가 → (2차) 심층·토론식 평가 → (3차) 발표평가
 - * 접수 마감 이후 최종 선정 결과 안내까지 약 3개월 소요
 - ** 평가단계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모델의 혁신성, 성장성, 시장확장성,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3440-7314
- K-유니콘 홈페이지(www.k-unicorn.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투자계약서 외에 투자의향서, 주금입금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으로도 투자실적 증빙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투자내역 확인이 가능한 투자계약서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8-7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 진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 유도

지원대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11년~'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또는 '16년~'21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또는 '19~'21년 한-러혁신플랫폼 사업 기 수혜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해외시장검증 :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창업기업에 글로벌진출교육, 현지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등 밀착지원
- 해외실증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실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글로벌 창업진출단계별 사업개편으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한 창업기업을 그 지원대상으로 함(예비창업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 * 정부지원금 확대 (25백만원 → 30백만원)
- * 해외 AC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국내 AC도 운영기관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보육기업의 10% 내에서 시드 투자 의무 예정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항목은 엑셀러레이터별로 상이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실) : 02-3440-7312, 732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사업 참여시 기업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이며, 이 중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입니다.

Q. 해외시장검증과 해외실증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시장검증과 해외실증지원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해외실증지원(PoC) : 해외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8-8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대기업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후보기업(40개사) 지원내용

- 타 기관 연계지원 추천 및 네트워킹 행사 등 지원

● 창업기업(20개사)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 교육·멘토링·IR·네트워킹 등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연계지원(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 부여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모집공고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3개월) → 사업화 자금 및 연계지원 등(7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창업아이템의 개발·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 목표 및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0, 169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은 얼마인가요?

A. R&D 과제마다 상이하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Q. 후보기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A. 최종 선정되는 창업기업(20개사)를 선정하기 앞서, 후보로서 선정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8-9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BIG3 분야 혁신성장 지원

글로벌 미래 성장동력인 BIG3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사업화·기술개발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을 선도하는 핵심 BIG3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BIG3 분야 업력 7년 이내 기업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최대 3년
 - 사업 선정 시, 최대 3년간 지원자격 유지
 - * '22년 선정 시, '24년까지 지원('22~'24년)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정책자금·기술보증 연계
 - (사업화) 연간 최대 2억원 (3년간 최대 6억원)
 - * 연간 사업지원금 배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예정
 - (연계지원) 기술개발, 정책자금, 기술보증(최대 30억원)
 - * (기술개발) 최대 6억원 (2년간, 별도 평가를 통한 연계지원)
 - *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수수료 등 우대)
 - * (기술보증) 최대 30억원 (수수료 등 우대)
 - (기타) 국내 사업화·기술개발·투자유치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 컨설팅 등 상시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or.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참여신청서 기반의 서류 및 발표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기술개발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1~4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A. 동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창업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선정 후 교부받은 지원금은 3년간 집행하나요?

A. 사업지원금은 매년 최대 2억원으로, 매년 초 사업지원금 배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화, 기술개발, 정책자금, 기술보증까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A. 선정 후 사업화 자금은 모든 창업기업에 지원되나, 기술개발, 정책자금, 기술보증은 별도 신청·평가 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용어설명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8-10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비대면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 발굴·지원

비대면 분야 유망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비대면 분야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5억원)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한 (예비)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인증, 기술평가 등)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공고문 붙임자료의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 종합 평가

처리절차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예산 45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400개사(최대 1.5억원 지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비대면창업실) : 044-410-1989, 1982, 199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비대면 창업아이템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Q.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사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높은 세부 분야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붙임자료의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확인하시어, 귀하가 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인증, 시장검증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8-11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국내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보유인프라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 마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19~21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포스트팁스 (POST-TIPS)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 고용, 특허 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교육, 전문기술 코칭, 유통망 연계, 마케팅·홍보,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현황 : ('19년) 구글플레이 → ('20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AWS, 다쏘시스템 → ('21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엔시스, 지멘스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기업 서비스 지원(8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시너지 : 협업 희망 분야와 계획, 보유역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처리절차

- 200개사 내외(예산 30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창업기업 200개사 선정·운영 중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글로벌 기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글로벌 기업에서는 보유한 인프라(전문인력, 플랫폼 등)를 통해 전문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연계,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촉진을 지원합니다.

8-12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팀(기업)의 사업화지원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사내벤처팀 및 업력 3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10개월 내외
 ● (지원규모) 150개 내외 창업기업(팀)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실증 및 시제품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금 최대 1억원

〈세부 지원 내용표〉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실증 자금	· 시험·인증, 소비자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성장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3월 공고 예정, 모집공고 확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모)기업 추천서 등

사업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5~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사내벤처팀(예비창업팀)은 언제 분사해야 하나요?

A. 사내벤처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Q. 후속지원(실증 자금 등)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중 '성공' 판정받은 후, 지원 가능합니다(별도 공고 안내).

용어설명

운영기업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

* 상·하반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선정

8-13

메이커 스페이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법인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 신청요건 : 일반랩(특화랩) 100㎡ 이상, 전문랩 기준 1,000㎡ 이상 전용공간 보유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개소 내외(일반랩(특화랩), 전문랩)
- 지원내용 :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예산 : 일반랩 1.5억원 내외(특화랩 1억원 내외), 전문랩 최대 15억원 내외
 -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구성
 -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본보조'와 제조창업 촉진 및 메이커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 지원으로 구분
- 지원기간 : 최대5년(3년+2년)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차등지원
 - 선정 후 3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기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 지원여부를 결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대응자금 규모 총사업비의 30% 구성 → 40% 구성 변경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절차 : ①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② 대면평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조 창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메이커 공간 및 장비 구축 계획의 타당성, 메이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2, 1884, 188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대응자금을 총 사업비의 40%를 매칭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을 의미하나요?

A.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현금, 현물)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Q.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기관)도 동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동 사업의 대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참여기관 : 주관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지방자치단체 포함)

중기평가 :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중간평가하는 것을 말함

8-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 '21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1, 1887, 189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12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61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8-15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로컬크리에이터*
 -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사업화 자금, 교육, 인프라 등 맞춤형 지원
- 사업화지원 : 사업화 BM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예비창업자, 창업기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최대 3천만원)
- 협업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선도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① 로컬 X 로컬, ② 로컬 X 선도기업 등
- 네트워킹 : 지역내 혁신을 위한 협업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간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킹 진행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규모

- 304명(100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3, 1885, 1890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로컬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으로 분류

- * ①지역가치 ②로컬푸드 ③지역기반제조 ④지역특화관광 ⑤거점브랜드 ⑥디지털문화체험 ⑦자연친화활동

8-16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 ▶ 협약기간 내 휴·폐업 혹은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접수일정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5, 192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Q&A

Q. 타 부처 및 중기부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타 사업과 중복 선정은 가능하지만, 창업기업이 타 사업에서 세무·회계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한 지원금(바우처) 집행은 어렵습니다.

Q. 세무·회계 자문료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료,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8-1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공간 등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사무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교육·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

지원대상

- (예비)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예비 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제공, 교육·전문가 자문 등 경영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시장조사, 유망산업,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 제공
사업화	· 마케팅(광고, 홍보, 디자인 개선 등) 및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킹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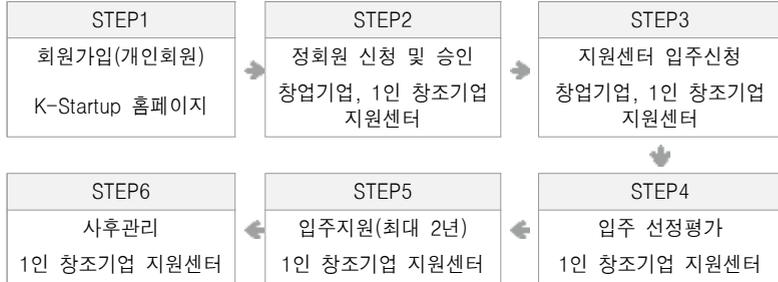
신청·접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게 입주 신청 가능
- 정회원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 상이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2, 1926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Q&A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K-스타트업 정회원 신청 시 선택하신 센터에서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Q.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모집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A. 지원센터별 모집시기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원센터에 모집 일정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받으면 입주가 되는걸까요?

A.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은 '1인창조기업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입주 신청은 센터별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하신 뒤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8-18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창업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신청·접수 ● '22년 연중 수시*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 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처리절차



처리절차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6개소 내외(22년, 46.08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1, 1928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4101	울산	동구	052-209-1510	
	성북구	02-941-7257		울주군	052-277-1996	
대구 경북	달서구	053-589-7558	인천	남동구	032-726-3883	
	수성구	053-784-8261		경기	성남시	031-707-5961~2
	칠곡군	054-973-9605			의정부시	031-850-5815~6
광주 전남	광주 동구	062-610-9520, 9522	경기	고양시	031-936-7485	
	전남 목포시	061-280-7499		포천시	031-539-2888	
충북	청주시(상당구)	043-254-8666	경기	안양시	031-8045-6715	
	청주시(서원구)	043-217-1311~2		이천시	031-639-1442	
충남	당진시(읍내동)	041-356-8748	경남	진주시	055-772-3613	
	서산시(해미면)	041-660-1327		양산시	055-380-9656	
	논산시(내동)	041-730-5626		김해시	055-310-9260~1	
대전	유성구	042-939-4741	부산	통영시	055-649-0216	
전북	익산시	063-851-7480		금정구	051-581-4050	
	전주시	063-711-2141	제주	서귀포	070-7732-0202	
	군산시	063-446-6700				

8-19

창업존 운영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

- 지원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선정 후 입주전 채무변제 완료 증빙시 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 입주 이력 또는 입주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보육공간 제공 : 창업기업 입주사무실 및 규모별 회의실, 행사 공간 등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구 분	주요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멘토링	· 소그룹 기술·비즈니스 멘토링, 1:1멘토링 등

- 인프라지원 : 통·번역, 3D 제작보육실 및 글로벌 테스트 베드

구 분	주요내용
통·번역센터	·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 보육실	·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2G~4G)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 내·외부 환경 이해도, 창업자 및 직원 역량 보유, 사업 아이템 기술성, 비즈니스 모델 분석, 시장성 등
- (발표평가) 창업자 역량 및 의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5, 1928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창업존 입주기간과 임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 A. 입주기간은 2+1년으로, 기본 입주 2년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 여부(1년)를 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관리비는 창업기업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 부 되며, 전용 면적 3.3㎡당 평균 50,000원 정도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Q. 창업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 A. 창업존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 이외에도 미팅룸, 수면실, 샤워실 및 공용OA사용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세미나, 대내외 네트워킹, 외국어 통번역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해외 통신망 테스트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8-20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원격근무 확산

지원대상 ● 중소기업 1.5만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주된 업종이 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 (지원금액) 1개사 당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
 - * 지원하는 서비스 분야 및 자부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자부담금 상향(기존 10% → 변경 30%)
- ▶ 선정방식 변경
 - * 자격요건 충족시 선착순 선정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
- ▶ 바우처 지급방식 변경
 - * 서비스 결제 시 바우처 지급 → 서비스 실사용 여부 확인 후 바우처 지급

신청·접수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서비스 활용계획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비대면창업실) : 044-410-1984~9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선정이 되면 바우처 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당시 선택한 결제수단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공급기업에 거래상담을 요청합니다. 공급기업에서 거래를 수락하고 수요기업에 결제를 요청하면 수요기업은 결제후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30%) 및 부가세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인데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공급하는 서비스 분야 이외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2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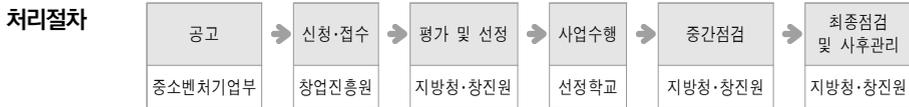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 '22년은 '21년 청소년 비즈쿨 학교 및 센터 연속 운영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지원규모

- '22년 예산 : 63.9억원, 전국 424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 '21년 지원현황 : 424개 기관(초등 92개, 중등 72개, 고등 212개, 특수·31개, 대안 8개, 센터 9개)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1~4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8-22

창업에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 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 지원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8-23

실전창업교육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창업교육 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 요건제품 제작, 고객반응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온라인 교육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 오프라인 교육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비(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교육 → 최종보고 등
- 처리절차** ● 교육생 2,100명 내외, 시장검증 200명 내외(29억원)
- * '21년 지원현황 : 2,282명 교육, 253명(팀) 시제품 제작 및 시장검증 지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8-24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지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신청·접수 ●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서류 ●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파산면책선고문, 주주명부, 정관, 출자자명부 등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 간소화

처리절차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창업기업공공구매실) : 044-410-1771~82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Q. 오프라인으로 신청은 어려운가요?

A.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진단이 무엇인가요?

A.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가진단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사실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8-25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지원대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 제외)
-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 초과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예산) 21.15억원, (규모) 20개팀 내외

지원내용

- 상금 (총 15.3억원, 수상자당 최대 3억원)
-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신청·접수

- 1~3월 중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통합 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접수
- 부처별 예선 → 본선 → 결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류협력실) : 044-410-1711, 171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8-26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분야 상생협력 지원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 포함)과 스타트업이 협업이 필요한 사업·기술을 상호 제안,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원대상**
- (1탄) 최초 신청마감일 기준 업력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2탄)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상태인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1탄) 수요기업별 선정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R&D 사업연계(최대 3억원), 정책자금 연계(최대 20억원) 지원
 - (2탄) 과제별 선정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R&D 사업연계(최대 3억원), 정책자금 연계(최대 20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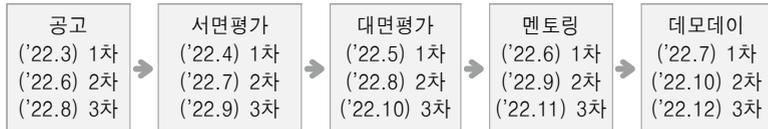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공기업·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 과제출제기업(수요기업) 참여
- ▶ 2탄의 경우 과제별 우수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21년과 다르게 과제별 1~3위 기업 모두 지원(순위별 차등 지원)
- ▶ R&D 사업연계 금액을 '최대 4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축소된 대신, 1,2탄 선정기업 중 20개사에 대한 전략형 과제(최대 3억원) 지원 확정
- ▶ 2탄의 경우 '20년 상장과 함께 지급하였던 상금 삭제

신청·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1탄)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수요기업 멘토링 → 데모데이*를 거쳐 수요기업별 최종 선정기업 결정(연간 3회 이상 운영 예정)

* 수요기업별 3개사 이내 선정 후 지원 연계



- (2탄) 예선(서면평가) → 본선(대면+알고리즘 개발) → 과제출제기업 멘토링 및 컨설팅 → 결선*을 거쳐 과제별 최종 우승기업 결정

* 과제별 3개사(1~3위) 선정 후 사업화 비용 차등 지급



심사·평가 주요내용

- (1탄) 기술 및 시장 이해도, 실현가능성, 사업성, 팀 구성 등 평가
 - (2탄) 과제 해결방안, 데이터 활용방안, 기술경쟁력, 사업화 방안 등 평가
- * 대-스타 2탄 본선평가는 온라인(알고리즘 개발), 오프라인(대면평가) 총 2차례 진행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류협력실) : 044-410-1715~1718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8-2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법인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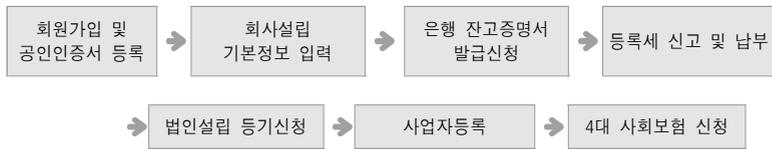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 (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처리절차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	------	----------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	-----------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	---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ICT전략실) : 044-410-165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

8-28

창업지원포털(K-Startup)

단계별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대국민)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⑤ 재창업(재창업자)에 맞추어 사업화,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3,000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 신청·접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ICT전략실) : 044-410-1652~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